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

(1991. . 규정 제 15호) (1992. 8. 18. 규정 제 64호)
(1995. 6. 20. 규정 제146호) (1996. 2. 22. 규정 제154호)
(1996. 9. 12. 규정 제169호) (1999. 1. 15. 규정 제227호)
(2001. 3. 20. 규정 제331호) (2001. 10. 9. 규정 제368호)
(2002. 9. 23. 규정 제386호) (2003. 6.13. 규정 제405호)
(2004. 10. 22. 규정 제439호) (2005. 5. 9. 규정 제461호)
(2006. 2.28. 규정 제508호) (2009. 4. 24. 규정 제612호)
(2012. 12. 18. 규정 제777호) (2013. 12. 24. 규정 제812호)
(2016. 11. 30. 규정 제896호) (2023. 12. 5. 규정 제1171호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공주대학교 학칙」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할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관리) ① 공주대학교 학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은 공주캠퍼스에 본관을 두고, 공주캠퍼스 이외의 각 캠퍼스에 분관을 둔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>

② 민간투자시설사업(BTL)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‘실시협약서’에 따른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③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관(분관)장(이하 “생활관(분관)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>

④ 방학 중 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(분관)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6. 11. 30.>

제3조(개관기간)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중 개관과 방학 중 개관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되, 생활관(분관)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연장,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>

제4조(이용제한) 생활관 및 모든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 입실 학생(이하 “관생”이라 한다)에 한한다. 다만, 교육 목적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관(분관)장은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5조(관생활동)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의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관생의 활동은 생활관(분관)장이 인정하는 범위 에서 허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6조(관생수칙) 생활관(분관)장은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수칙을 정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2장 조직

제7조(생활관(분관)장 등) ① 본관에 학생생활관장(이하 “생활관장”이라 한다), 분관에 학생생활관분관장(이하 “분관장”이라 한다), 본관과 분관에 생활지도교수와 생활지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30., 2023. 12. 5.>

② 생활관장 및 분관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③ 생활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23. 12. 5.>

④ 생활지도사는 재학생 중에서 생활관(분관)장이 임명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(분관)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, 2023. 12. 5.>

제8조(생활관(분관)장 등의 임무) ① 본관의 생활관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,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

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 분관을 포함한 생활관 주요운영 현황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② 분관장은 분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③ 생활지도교수는 생활관(분관)장을 보좌하며, 생활지도교수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 12. 5.>

④ 생활지도사는 생활관(분관)장과 생활지도교수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관생을 관리한다. <개정 2016. 11. 30., 2023. 12. 5.>

[제목개정 2016. 11 .30.]

제9조 삭제 <2023. 12. 5.>

제10조(직원) ① 생활관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.

②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직원 운영은 노사간 단체(임금)협약과 「공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지침」에 따른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23. 12. 5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위원회)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 12. 24.>

제12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, 생활관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3. 12. 24., 2016. 11. 30., 2023. 12. 5.>

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분관장, 학생복지과장, 재무과장, 시설과장, 정보화과장 및 생활지도교수로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3. 12. 24., 2016. 11. 30., 2019. 10. 29., 2023. 12. 5.>

③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, 생활관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24.>

④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분관장, 재무과장,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생활관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. <개정 2013. 12. 24.>

1. 관생 대표 3명
2. 관련전문가 1명
3. 학외 인사 1명

제13조(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>

1. 생활관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2. 예산 및 결산
3.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 12. 24.>
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제4장 입실과 퇴실

제15조(입실절차) 생활관에 입실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에 입실원서를 생활관으로 제출한다.

제16조(입실자격 및 입실배정인원) 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으로 하며, 입실배정인원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제17조(선발기준) 입실을 원하는 학생수가 수용 정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관(분관)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1. 사회적 배려자 등 우선선발대상자
2.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

제18조(입실자격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실할 수 없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>

1.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
2. 전염병 질환, 이환자 및 보균자
3. 제21조에 따른 퇴실처분을 받은 사람
4. 그 밖에 생활관(분관)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

② 입실자격의 제한 기간은 생활관(분관)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6. 11. 30.>

제19조(입실등록) 생활관(분관)장으로부터 입실허가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생활관비를 완납한 다음 생활관(분관)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처소에 입실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20조(임의퇴실) 퇴실을 원하는 관생은 (보호자 연서의 사유서를 첨부) 정해진 퇴실원서를 퇴실 7일 이전에 제출하여 생활관(분관)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21조(퇴실처분) 생활관(분관)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생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30.>

1. 정해진 벌점을 받은 사람
2. 생활관비를 미납한 사람
3. 학교등록 미필자
4.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
5.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
6. 교직원에게 예의를 벗어난 언어, 행동, 태도를 보이는 사람
7. 형사상 위법행위를 한 사람
8. 관내 흡연 및 취사행위를 한 사람
9. 대리 입실을 하거나 제공한 사람
10. 허가없이 이성(異性)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을 숙박시킨 사람
11. 그 밖의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(분관)장이 인정한 사람

제22조(입실허가 및 개관기간) ① 입실허가는 학년도 초마다 생활관(분관)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>

② 입실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중도 입실자의 입실기간은 해당 학년도 개관만기일로 종결된다. <개정 2012. 12. 18.>

제5장 재정

제23조(재정부담) 보조를 받은 경비 외에 생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24조(재정운영) 생활관의 재정운영은 생활관(분관)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25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.

제26조(생활관비 및 장학금 지급) ① 관생은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② 생활관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사용한다. 다만, 은행이자는 관리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1. 30.>

1. 관리비: 생활관 직원 급여 및 비품구입 등

2. 식비: 주、부식비 등

③ 생활지도사와 관생자치회 임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기준은 생활관(분관)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24., 2016. 11. 30.>

제27조(경비추가징수) 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28조(개관 후 생활관비의 징수와 환불) 개관 후 생활관비의 징수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(분관)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29조(생활관비 납부시기) 관리비 및 식비는 학기 마다 학기 개시 전 별도 공고되는 사항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.(일부개정, 2012. 12. 18.)

제30조 삭제 <2023. 12. 5.>

제6장 상벌

제31조(포상) 생활관(분관)장은 생활관내 공동생활이나 각종 행사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에게 표창 또는 이를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30.>

제32조(징계) 관생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
1. 경고

2. 퇴실

제33조(벌점제)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하는 관생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7장 기타

제34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생활관(분관)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1. 30.>

[본조신설 2012. 12. 18.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.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당시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992. 8. 1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995. 6. 2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2. 2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9. 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331호, 2001. 3. 20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공주옥룡캠퍼스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2학년도 까지 공주문화대학 생활관 관련 규정 등에 의한다.

부 칙(규정 제368호, 2001. 10. 9)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02. 9. 2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405호, 2003. 6. 1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439호, 2004. 10. 2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5. 9. 규정 제 461호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규정 제508호, 2006. 2. 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4. 24. 규정 제61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18. 규정 제77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24. 규정 제81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11. 30. 규정 제89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2. 5. 규정 제1171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